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4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권영진·우재준·이만희

김상훈 • 정희용 • 김승수

권영세 · 김도읍 · 조승환
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목(地目)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, 전·답·대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있음.

이러한 지목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, 토지개발행위의 인·허가 기준 등 토지행정에 활용되고, 국토의 용도별 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지표이며, 지목에 따라 각종 토지관련 세금·부담금 부과, 토지보상평가 등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지 정보이나 2002년 이후 지목 명칭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태임.

한편, 자동차 등록대수 2,600만시대에 세차장, 폐차장, 자동차 거래 장소, 터미널 등 자동차 관련시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자동차 관련 지목은 주차장이 유일하며 자동차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목 이 부재하고, 주유소용지의 경우 에너지원이 유종에서 수소, 전기 등 으로 다양화되어 주유뿐만 아니라 전기충전소, 가스공급, 유류저장소,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설들이 증가하여 더이상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은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.

이에, 자동차 시설의 증가, 에너지원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지목을 신설하여 국토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(안 제67조제1항).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 중 "주차장·주유소용지"를 "교통용지·에너지용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지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"주차장" 및 "주유소용지"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"교통용지" 및 "에너지용지"로 각각 본다.
 - ②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토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 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사·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,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8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표시 변 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 - 1. 제1항에 따라 교통용지 또는 에너지용지로 보는 토지

- 2. 지적소관청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 장 또는 주유소용지 외의 지목이었던 토지로서 제67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따라 교통용지 또는 에너지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하는 토지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"주차장" 및 "주유소용지"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"교통용지" 및 "에너지용지"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지목의 종류) ① 지목은	제67조(지목의 종류) ①
전 • 답 • 과수원 • 목장용지 • 임	
야・광천지・염전・대(垈)・공	
장용지·학교용지· <u>주차장·주</u>	<u>교통용</u> 지 • 에
<u>유소용지</u> ·창고용지·도로·철	<u> 너지용지</u>
도용지・제방(堤防)・하천・구	
거(溝渠)・유지(溜池)・양어장	
·수도용지·공원·체육용지·	
유원지 · 종교용지 · 사적지 · 묘	
지・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	,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